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6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개정('15. 1. 6.)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안 시달('16.9.22.)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개정하고자 함
(상시출장을 요하는 → 상시출장이 필요한, 범위안에서 → 범
위에서, 일괄 → 한꺼번에, 통산 → 합산, 의하여 → 따라, 기타
띄어쓰기 정비 등)

4. 주요내용

- 국내 출장시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 (안 별표)

구 분	현행	개정
제1호	46천원(도지사는 실비)	실비
제2호	40천원	실비 (상한액 : 서울 70천원/ 광역시60천원 그 외 50천원)

-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명문화
(안 제5조제4의2호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개정 (안 제2조 등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,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.

붙 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